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4. 21 선고 2020나221755(본소), 2020나221762(반소) 판결

[유체동산인도 · 계약금 반환 청구 등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정필

변 론 종 결 2022. 3. 31.
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8. 선고 2019가단2001(본소), 2019가단 131770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19,793,92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피고는 제1심에서 선금 10,000,000원과 차임 상당액 9,295,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9,125,000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9,12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가.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의 인도를 구하였고(본소),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1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,000,000원의 반환, 차임 합계 9,295,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, 대납한 전기요금 498,82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고(반소), 제1심법원은 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각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0,000,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하고, 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하되 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다. 제1심판결에 대하여,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, 피고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 후 이 법원에 이르러 9,125,000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.

라. 따라서 본소와 반소 중 ,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,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 중 9,125,000원 상당의 약정금 반소 청구 부분이다.

2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(제1심판결 제2쪽 17번째 줄부터 제4쪽 5번째 줄까지)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[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]

○ 제1심판결 제3쪽 14번째 줄 “G에게 2018. 8. 4. 보증금 중 500만 원을, 2018. 9. 6. 보증금 잔액 1,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.”를 “G에게 2017. 8. 4. 보증금 중 500만 원을, 2017. 9. 6. 보증금 잔액 1,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.”로 수정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쪽 3번째 줄 아래에 “바. 피고는 2017. 9. 1.부터 2018. 9. 30.까지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G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차임 등 합계 18,250,000원을 지급하였다.”를 추가한다.

3.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

가. 피고

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차임 1/2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차임 합계 18,250,000원의 1/2인 9,125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

이 사건 공장의 차임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.

4. 판단

갑 제22호증, 을 제3, 6, 7호증(원고는 을 제6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

주장하나,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을 제6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차임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원고와 피고는 2018. 9. 12. 이 사건 공장인수계약의 해제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이 사건 합의서(을 제6호증)를 작성하였는데, 이 사건 합의서에는 “D(원고)에서 E(피고)에 팔기로 했던 기계류 일체에 대한 계약금 일천만 원을 2018. 10. 15.까지 E에 돌려주고 기계 일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을 명시합니다” 등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장의 차임 부담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.

반면, 원고와 피고가 2018. 9. 13. 이 사건 공장인수계약에 관한 재합의를 시도하며 작성된 D사 기계류매매계약서(을 제7호증) 초안에는 ”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15,000,000원을 지급하되 2017년 8월 계약 이후 2018년 9월까지 사용한 공장 월세의 절반 금액인 7,500,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8년 월 일1) 까지 지불한다.“고 기재되어 있다.

위 내용들을 종합하면, 원고와 피고는 2018. 9. 12. 피고가 기계류를 반환하고 원고가 계약금 10,000,000원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, 그 후 2018. 9. 13.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15,000,000원에서 차임 7,500,000원을 공제한 7,500,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기로 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

그렇다면,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대로 정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, 이 사건 합의서에는 차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,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0,000,000원만 반환하며,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(설령,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에 차임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2018. 9. 12.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차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).

피고는 수사기관에서, ”원고로부터 인수한 기계를 옮기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 자체를 이

사건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, L 공장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약 1년간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고 원고도 잔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“고 진술했는바, 피고가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원고에게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, 이에 사실상 원고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·사용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원고는 2018. 10. 5. 피고와 통화하면서 ”월세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“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. 그런데 위 대화 내용을 보면, 원고의 물품 회수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작업할 권리는 있냐고 묻자 원고가 월세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대답한 것으로, 위와 같은 대화 경위에 비추어, 원고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차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. 실제로 원고는 2018. 9. 18. 피고에게 ‘지난 1년 동안의 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의 판단을 따르자.’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는바,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차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, 원고가 차임 약정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5. 결론

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기현, 판사 윤영수, 판사 서동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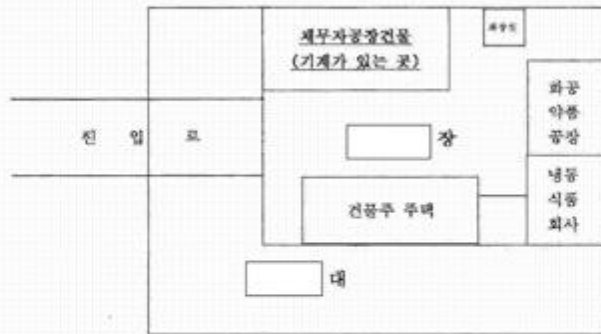
별 지 목 록

번호	물 품	제 조 사	기계사양	수 량	평가액
1	데코타일우드재단기		도무송	1대	25,000,000원
2	데코타일사각재단기		도무송	1대	
3	종이재단기			1대	
4	원단재단기			1대	
***위 기계의 실물 사진을 뒷장에 첨부합니다.					사진4매

• 위 기계와 있는 곳의 주소지

양주시 (도로명 주소: 양주시)

위 주소지 도면



Page 1 of 1



① 레코라이얼
유 드재판기

2018-12-12

Page 1 of 1



② 테고라클
사각재단

2018-12-12

Page 1 of 1

③ 종이
재단기

2018-12-12

㉔ 원단재단기

Page 1 of 1



2018-12-12

1) 을 제7호증에는 구체적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다.